

자유센타의료기 복지용구 운영규정

제 1장 총칙

1. 명칭

자유센타의료기 복지용구사업소(이하 '기관'), 장기요양 수급자(이하 '수급자'), 장기요양급여제공자(이하 '기관 및 직원'), 장기요양 서비스(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물품)(이하 '서비스')라 한다.

2. 목적

본 기관은 고령이나,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, 사회복지사업법, 노인복지법,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신체적 기능상태 향상에 도움과 가족수발 부담을 줄여주며 나아가 생활환경 및 심리적, 신체적 어려움으로 생활의 곤란함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, 사회적 역할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지 함으로써 소속된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3. 사업장 설치

본 기관의 사무소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8 자유센타 106호 에 둔다.

4. 사업내용

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를 대여 및 판매한다.

5. 사업대상

가.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 (1~5등급) 수급자 중 복지용구를 구매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

제 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 1 조 (이용계약의 목적)

1.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수급자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

2. 보호자로 하여금 수급자의 원활한 간호, 간병을 위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수급자 케어의 고충을 경감시킨다.

3. 수급자에게 필요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공한다.

제 2 조 (이용계약의 기간)

1. 계약기간은 계약당일에서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, 이용자 및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.

2. 제1항은 대여품목에 한정한다.

3.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, 입원 등 중요한 신변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서면 등으로 상호 합의 처리한다.

제 3 조 (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)

1. 복지용구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.

다만, 수급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가.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복지용구제품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는 공단에서 지정한 수가를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,